

Ⅲ한국의 세무조사 현황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시 준수사항을 엄격히 지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세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 져야 함은 당연하며, 국세청에서는 조사사무 처리규정을 1989년 1월 25일 제정(국세청훈령 제 1032호)하여 세무조사 시 반드시 이 규정대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정 이후 15차례 훈령을 개정 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납세자에게 권리현장을 교부함으로써 세무조사가 시작 된다. 작성순서는 (1)납세자 권리 (2)세무조사관할 및 대상 (3)세무조사 (4)세무조사결과 통지 (5)비밀유지 (6)납세자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7)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8)과세전 적부심사 (9)납세자의 협력의무 (10)납세자 보호위원회 (11)조사사무처리규정 순으로 한국의 세무조사 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납세자 권리

1)납세자권리현장의 제정 및 교부(국세기본법 제 81 조의 2)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제정·고시한 납세자 권리현장을 납세자에게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는 등 납세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명해 주어야 하며, 납세자 권리현장, 세무조사 사전통지 등의 수령증을 제출 받아 조사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①국세청장은 납세자의 성실성추정,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세무조사시 조력을 받을 권리,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세무조사 기간,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장부 서류 보관 금지,통합조사의 원칙,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비밀유지,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과세전적부심사, 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에 대한 사항과 그밖에 납세자의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현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현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a.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

b.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

c.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후 납세자권리현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납세자 권리현장】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국세공무원은 납세자가 신성한 납세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편익을 최대한 제공해야 하며,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현장은 납세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1. 납세자는 기장 · 신고등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탈루혐의 등이 없는 한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세무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납세자는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조사결과의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하고 그 결과를 통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납세자는 세무조사 시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법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4. 납세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 그 사유와 기간을 문서로 통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6. 납세자는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7. 납세자는 위법적인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당한 경우에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8. 납세자는 위법적인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9. 납세자는 국세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납세자의 성실성 추정(국세기본법 제 81 조의 3)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세당국은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는 경우처럼 특별히 성실성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①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경우

- ②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 ③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 ④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3)세무조사권 남용 금지(국기법 제 81 조의 4)

①세무조사권 남용금지의 의의

조사 공무원은 아래와 같이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a.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b.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c. 2 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d.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 또는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재조사 결정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심판청구의 경우, 심판원 입장에서는 기각을 하기엔 논리가 부족하고, 인용을 하자니 기존의 사례를 뒤집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 국세청과 대기업 사이에 새롭게 엇갈리는 쟁점이 있으면 재조사 결정이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최근 나오는 재조사 결정은 해외 자회사에게 지급보증을 해주고 받는 수수료가 적다는 사유로 재조사 결정을 받은 국내 대기업이 상당수 달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현재 법인세 심판청구 재조사 현황은 다음과 같다.(2015/06/22현재)

연 도 별	심판청구 건수	재조사 건수	비율(%)
2013년도 상반기	207	0	0
2013년도 하반기	356	0	0
2014년도 상반기	482	44	9.1
2014년도 하반기	408	36	8.8
2015년도 상반기	321	28	8.7

e. 그밖에 제 1 호부터 4 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과세관청의 조사 중 금지 행위

조사공무원은 조사편의 등의 목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조사 기간 중 금지행위】

- (1)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관련 장부·서류 등을 압수·수색하거나 일시 보관하는 행위
- (2)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승인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조사기간의 연장, 조사 범위의 확대 또는 거래처 현장확인을 하는 행위
- (3) 거래처, 관련인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대상자 선정, 전산입력, 조사 통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조사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실시하는 행위
- (4) 세무조사와 관련 없이 납세자와 그 관련인의 사생활 등에 관한 질문을 하는 행위
- (5) 그 밖에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③조사권남용에 대한 조사관리자의 관리 및 감독의무

조사관리자는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사권을 남용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절차 준수 여부 등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④조사권남용 위반자에 대한 재발 방지조치

조사관서장은 조사권 남용금지 또는 조사 중 금지행위를 위반한 조사공무원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조사관리자에 대하여 「국세청공무원상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벌하고,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여부에 따라 조사분야 퇴출, 교육 등 적절한 재발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세무대리인의 선임(국기법 제 81 조의 5)

①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기간 조문	2011.1.1~2011.12.31 까지	2012.1.1~현재
국세기본법 제 81 조의 5 (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범칙사건의 조사,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u>조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u>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의미

국세기본법 제 81 의 5 조(법률 11124 호,2012.1.1. 시행) 개정으로 세무조력자의 범위에서 “조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삭제됨으로써, 현재는 세무대리인을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로 한정하고 있다.

②세무대리 위임장의 제출

조사공무원은 세무대리인이 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무대리인으로부터 그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제출 받아 조사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세무대리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세무대리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한 세무대리인에 대하여는 세무조사 과정에의 입회 및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④선임된 세무대리인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

조사공무원은 세무대리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조력의 범위를 넘어 조사를 방해하거나 늦추려는 경우,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 또는 납세자가 직접 진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납세자가 직접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조사공무원이 세무대리인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

- (1) 세무대리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조력의 범위를 넘어 조사를 방해하거나 늦추려는 경우
- (3)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
- (4) 납세자가 직접 진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5) 기타사항

(2)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국기법 제81조의 6)

세무조사의 절차를 살펴보면 ‘조사사무처리규정’상 조사대상자선정 → 조사계획 수립 → 세무조사의 시작 → 세무조사 진행 → 세무조사의 종결로서 5단계로 구분된다.

1)세무조사관할

세무조사관할은 납세지를 관할세무서장이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국세청장 또는 지방청장이 수행한다. 통상 대형법인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국기법81조의 6 ①)<신설 2014.1.1>

조세범칙사건은 해당 조세범칙사건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관할로 한다. 다만,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한 조세범칙사건, 그 밖에 지방국세청장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건은 지방국세청장의 관할로 할 수 있으며 조세범칙조사의 실시를 위해 지방국세청에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둔다. 조세포탈범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병과별주의/가중처벌)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세무조사관할에 대해서는 국세청훈령인 조사사무 처리규정 제2절 세무조사의 관할 제5조의 조사사무의 관할과 제6조 세무조사의 협조체제를 참조하기 바란다.

【세무조사 관할조정】

법 제81조의6제1항 단서에서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 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기령 63조의 3)

1. 납세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와 납세지가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
2. 일정한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 거래가 있는 자 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4. 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세무조사 인력 등을 고려하여 관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 1) 국세청 조직



표 2) 국세청 조사국 조직과 기능

구분	담당사무
조사기획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국세세무조사 총괄 기획·관리 • 내국세세무조사 관련 법규·제도의 운영 총괄 • 조세범칙제도의 운영·관리 업무 • 조사인력 개발·양성관련 업무
조사1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납세자 및 관련인에 대한 분석·관리 • 주식·출자지분 변동상황 분석·관리
조사2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납세자 및 관련기업에 대한 분석·관리 • 세금계산서 등 수수질서 분석·관리 • 물가안정에 관한 지원업무 등
국제조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거래의 중요탈세유형에 대한 분석·관리 • 외환전산자료 수집 및 처리 • 국제거래관련 자료 수집·분석 및 관리
세원정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세 및 세원정보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업무 • 탈세정보자료 및 차명계좌 신고의 접수, 처리 업무 • 국민탈세감시단 바른 세금 지킴이 관리업무 운영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조사1국, 조사2국, 조사3국, 조사4국, 국제거래 조사국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조사4국은 특수세무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최근 경영권분쟁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롯데그룹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정기조사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의례적으로 세무조사를 마무리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어 조사4국에서 세무조사를 착수하였다고 한다.

부산지방국세청의 경우 조사1국 및 조사2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조사1국에서는 주로 법인기업을, 기타업무는 조사2국에서 취급하고 있다.

2)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조사대상자 선정 시 납세자는 성실하고 진실할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며, 세무조사 실시사유 및 기준을 공개하여야 하며, 조사대상자 선정방법, 신고성실도 평가, 선정절차, 중복조사의 금지 및 방지에 대하여 조사사무처리에서 규정하고 있다.

세무조사 실시사유 및 기준의 공개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은 세무조사 운용방향과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범위·시기·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고성실도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세, 양도소득세 등의 신고사항과 각종 세원정보 등을 반영하여 전산시스템에 의해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고, 세무정보자료 수집 등 세원관리 정보에 의한 평가로 보완할 수 있다. 전산시스템으로 신고성실도를 평가할 때에는 평가요소 및 가중치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정하여야 한다.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신고혐의,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하여 표본조사에 정기조사대상자로 선정하며, 납세협력의무불이행, 무자료거래, 구체적인 탈세제보, 신고내용에 탈루가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 선정은 조사사무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하며,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대상자 선정내용을 검토·조정할 수 있다. 이때 중복조사를 방지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국기법 81조의 6 ②) <개정 2013.1.1, 2014.1.1>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장기 미 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기준】

법 제81조의6 제2항 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이력이나 세무정보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국기령 63조의 4)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① 법 제81조의6 제5항 제1호에서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개인: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

2. 법인: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어야 할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을 말한다)이 1억 원 이하인 자

② 법 제81조의6 제5항 제2호에서 "장부 기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3.2.15, 2014.2.21>

1.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방식으로 장부를 기록·관리할 것

2. 과세기간 개시 이전에 「여신전문 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84조의2 제1항 제3호 각 목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

3. 과세기간 개시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84조의2 제1항 제4호 각 목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

4.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른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5. 업종별 평균 수입금액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액 등의 신고기준에 해당할 것

6.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7.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국세의 체납사실이 없을 것
최근 9년간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대상인원 (천명)	개인	2,236	2,279	2,736	3,074	3,584	3,570	3,785	3,956	4,353
	법인사업	342	361	372	394	416	440	467	500	538
조사인원 (명)	개인사업	3,989	4,049	4,090	3,335	3,068	3,624	3,669	4,563	4,392
	법인사업	6,343	5,545	4,174	2,974	3,867	4,430	4,689	4,549	5,128
부과세액 (억원)	개인사업	2,298	4,563	5,775	4,245	4,771	5,175	7,175	8,571	10,068
	법인사업	30158	27993	39363	26590	20735	35501	44438	49377	66128
조사비율 (%)	개인사업	0.18	0.18	0.15	0.11	0.09	0.10	0.10	0.12	0.10
	법인사업	1.86	1.54	1.12	0.76	0.93	1.00	1.00	0.91	0.96

최근 9년간 조세포탈 범칙조사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부과세액(억원)	9,045	5,299	8,327	8,002	7,008	10800	16569	13824	22753	
조사 (명)	조사건수	327	399	554	565	383	443	527	641	583
	범칙처분	316	369	530	536	347	421	504	614	523
	고발	277	328	434	468	301	369	449	570	454
	통고처분	39	41	96	68	46	52	55	44	69
	무혐의	11	30	24	29	36	22	23	27	60

세무조사에서도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된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①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사건에서 실질소득자가 아닌, 단지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 과세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대한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조사사무 처리규정 -

제3절 조사대상자의 선정

제 7 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 81 조의 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에 따라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제 8 조(조사대상자 선정기준 및 공개)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같은 조 제 1 항 제 3 호에 따라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납세자의규모, 업종 등을 감안하여 성실한 납세자가 조사를 받는 사례가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세무조사의 공평성·실효성 확보 및 국민의 알권리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세무조사 운용방향과 조사대상자 선정 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 9 조(조사대상자의 선정방법)

① 조사대상자의 선정방법은 정기선정과 비정기선정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선정은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2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신고성실도 평가결과, 미 조사연도 수 등을 기준으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일괄하여 선정한다.

- ③ 비정기선정은 공평과세와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3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이 선정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긴급조사, 부분조사, 자료상 조사 및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 등을 제외하고는 지방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국세청장은 업종별 신고성실도, 계층별·유형별·지역별 세부담 형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조사비율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0 조(신고성실도의 평가)

- ① 신고성실도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세, 양도소득세 등의 신고사항과 각종 세원정보 등을 반영하여 전산시스템에 의해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고, 세무정보자료 수집 등 세원관리(이하 “세원관리”라 한다) 정보에 의한 평가로 보완할 수 있다.
- ② 전산시스템으로 신고성실도를 평가할 때에는 평가요소 및 가중치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1조(선정절차)

- ① 조사대상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선정한다. 다만,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대상자 선정내용을 검토·조정할 수 있다.
- ③ 조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납세자의 세무조사 이력 및 조사대상으로 이미 선정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중복조사를 방지하여야 한다.

제12조(중복조사의 금지 및 방지)

-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남용 금지)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시작 후에도 중복조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철회 및 조사반(팀) 철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 제2호에서 정의한 현장확인(현장확인)은 조사로 보지 아니하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내용에 대한 부분조사로 한정한다.
- ②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의 조사국·과장 또는 성실납세지원국장·개인납세과장·법인납세과장 등은 조사이력 및 조사대상자 선정명세 등을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③ 부분조사를 실시한 납세자에 대하여 전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부분조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한 것으로 본다.
- ④ 일반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조사대상 기간에 대한 일반세무조사는 이미 실시한 것으로 본다.

3)사전 성실 신고유도

국세청은 기존 사후검증에서 2014년부터 사전안내 강화로 국세행정운영방향을 전환하였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업체별로 전년도 신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사전에 성실신고를 유도하도록 각 세무서별 협의회를 통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한 결과 전년도에 비해 세수가 늘어났다고 설명하였다. 국세청은 세입예산을 맞추기 위해 사전안내 강화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한편 고의적·기능적 탈세에는 엄정 대응을, 중소기업인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의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납세자에 대한 사전안내 강화로 세수실적이 늘어나면서 국세청이 사전안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새롭게 구축된 '채납자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015년 7월 6일 국세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 세입예산 확보 방안 등 2015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한편 성실신고를 지원한다는 목표 아래 ▲소관 세입예산 확보 ▲사전 성실신고 지원 ▲중소상공인과 서민에 대한 지원 강화 ▲반사회적 탈세행위 엄정 대처 ▲조직역량 향상과 세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국세청이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위해 사전안내를 강화한 결과,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소득세수가 늘어나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 2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때부터 4월 법인세 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납세자 일부를 선정해 탈세유형 등 사전안내를 강화했다.

부가세의 경우 5000명의 납세자에게 2종만 제공하던 자료를 40종으로 늘려 5만5000명에게 제공함으로써 부가세수는 지난해 4월 11조7000억원에서 올해 4월 12조7000억원으로 8.5% 증가했다.

표면적으로는 사전안내 강화이지만 국세청이 탈세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를 선정해 일종의 '경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안내문을 보냄으로써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의 경우는 6만명에게 15종의 자료를 제공해 지난해 4월 기준 15조7000억원이던 세수가 올해 4월에는 17조8000억원으로 13.4% 증가했다.

소득세수는 아직 집계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1만5000명에게 보냈던 안내문을 53만명에게 보냄으로써 세수가 상당 폭으로 증가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앞으로 있을 신고에서도 사전안내를 강화하는 등 이 같은 기초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사전 제공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업종별·규모별로 차별화해 성실신고효과를 높이는 한편 사전안내를 했음에도 불성실신고를 한 납세자에 대해선 사후검증을 신속하게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고의적·지능적인 탈세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계속 유지해나가기로 했다.

역외탈세 등 지하경제 양성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거짓진술과 세법집행 방해자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조세포탈에 대한 엄정한 범칙처분과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 T/F를 운영해 소송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조사분야 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달에 구축되는 체납자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생활실태 확인과 현장추정 등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중소상공인과 서민에 대한 세무조사를 축소하는 등 세정지원 강화 기초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실제 국세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지난해 4만6600건에서 올해 1만3400건으로 70% 줄었으며 소득세의 경우 지난해 1만9000건에서 올해 1만3500건으로 줄었다.

국세청은 올해 초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예년보다 낮은 1만8000건 수준으로 축소하고 세정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올해 말까지 세무 차명재산을 환수하고 법적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질문·검사권 행사범위를 체납자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친족까지 확대해 추진,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을 활성화 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전담조직(지방청 18개팀, 121명 배치)을 통해 고액체납자의 조사와 사후검증을 유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 세무조사

1)세무조사기간

가. 일반세무조사의 조사기간

조사관서장은「국세기본법」 제81조의8(세무조사기간) 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세무조사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조사기간 연장사유 -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세무조사기간) 제1항

①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006.12.30 신설)

1.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2010.01.01 개정)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2010.01.01 개정)
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사유형이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2011.12.31 개정)
4.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2010.01.01 개정)
5. 제81조의16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보호관 등”이라 한다)이 세금탈루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014.01.01 개정)
6.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보호관 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2014.01.01 신설)

다.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조사기간

조사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정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2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 1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인 납세자(이하 이 규정에서 “중소규모 납세자”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조사기간의 계산

조사기간의 계산은 조사시작일부터 조사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조사기간 중의 토요일·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마. 세무조사기간 -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3항

③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정한 세무조사를 제1항 단서에 따라 연장하는 경우로서 최초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연장의 경우에는 관할 상급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이 항 본문의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2014.01.01 신설)
2. 국제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脫漏)하거나 국내 탈루소득을 해외로 변칙 유출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2014.12.23 개정)
3. 명의위장, 이중장부의 작성, 차명계좌의 이용, 현금거래의 누락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2014.01.01 신설)
4. 거짓계약서 작성, 미등기양도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2014.01.01 신설)
5. 상속세·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2014.01.01 신설)

2)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가. 세무조사 사전통지의 실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작성하여 조사개시 10일 전에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송달하고 송달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제1항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1.12.31 개정) [부칙]

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 6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2010.02.18 개정)

1.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1996.12.31 개정)
2. 조사기간(1996.12.31 개정)
3.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1996.12.31 개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2010.02.18 개정)

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조세범칙조사 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시작 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뜻이 기재된 세무조사 통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마. 공동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

공동사업장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공동사업자가 아닌 공동사업자(이하 “비대표 공동사업자”라 한다)를 세무조사하는 경우에는 비대표 공동사업자에게도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하여야 한다.

바. 세무조사의 연기 사유

조사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시작을 연기할 수 있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7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
2. 「납세자보호 사무처리규정」 제59조 제4항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조사의 시작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제2항

②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아. 세무조사의 연기신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7

① 법 제81조의7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2010.02.18 개정)

1. 화재,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2010.02.18 개정)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1996.12.31 개정)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증거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되었을 때(2010.02.18 개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2010.02.18 개정)

② 법 제81조의7 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1.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2010.02.18 개정)
2.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기간(2010.02.18 개정)
3.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사유(2010.02.18 개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2010.02.18 개정)

자. 「납세자보호 사무처리규정」 제59조 제4항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사 착수 전일까지 세법 등에 위반된 조사 또는 중복조사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서에 의하여 세법 등에 위반된 조사 또는 중복조사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있을 때까지 주무국(과)장에게 조사 착수 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무국(과)장은 세무조사 착수를 연기하여야 한다.

차. 세무조사의 연기 신청가능자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또한 조사관서장이 세무조사를 연기할 경우에는 당초 조사시작 예정일 전일까지 세무조사 연기 통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카. 세무조사의 연기신청 결과 통지

연기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개시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타. 세무조사의 연기 후 조사개시

조사관서장은 세무조사 연기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연기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연기사유가 소멸되었거나 증거인멸 우려 또는 조세채권 조기 확보 등 긴급히 조사를 실시하여야 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세무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경우로서 당초 납세자에게 통지한 연기기간과 달리 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재개 통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조사반(팀)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이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를 시작한다.

3) 세무조사 방법

세무조사 방법은 조사대상자의 납세성실도수준, 사업규모, 업종, 과세자료 분석내용, 탈루혐의사항 및 탈세정보내용 등을 고려하여 전부조사, 부분조사 및 단기성실성 검증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가. 전부조사

전부조사를 하는 때에는 그 납세자가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전산조직에 의해 장부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전자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조사와 그 장부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실물조사, 생산수율 검토, 각종 현황조사, 거래처 조사 또는 거래처 현장확인 및 금융거래 현장확인 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나. 부분조사

납세자의 편의 및 조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이전가격조사

2. 세무정보, 과세자료 등에 의해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의 일부에 대한 신고의 적정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세무조사, 기획분석 등의 결과 특정 항목에 대한 공통적 문제에 대하여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부분조사만으로도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부분조사의 전산입력 및 관리

조사관서장은 부분조사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범위, 세목 등을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라. 사무실조사

“사무실조사”란 납세자 편의, 회계투명성·신고성실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실시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의 회계서류 및 증빙자료 등을 제출 받아 조사관서 사무실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마. 단기성 검증조사(간편조사)

“간편조사”란 상대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해명자료의 요구·검증 및 최소한의 현장조사 방법 등에 의해 단기간의 조사기간 동안 조사를 실시하고 회계·세무 처리과정에서 유의할 사항 안내, 경영·사업자문 등을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바. 관련인에 대한 동시조사

조사의 효율성, 납세자 편의 등을 감안하여 조사대상 납세자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 거래가 있는 자 또는 납세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 관련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관련인”이라 한다)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조세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인을 동시에 조사할 수 있다.

관련인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관련인의 납세지가 다른 지방국세청 관할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련인에 대한 동시조사가 부분조사인 경우에는 지방청장의 승인 없이 동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사. 기타의 세무조사

1. “일반세무조사”란 특정납세자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목적으로 조사대상 세목에 대한 과세요건 또는 신고사항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는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말한다.

2. “조세범칙조사”란 조사공무원이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말한다.

3. “추적조사”란 재화·용역 또는 세금계산서·계산서의 흐름을 거래의 앞·뒤 단계별로 추적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4. “기획조사”란 소득종류별.계층별.업종별.지역별.거래유형별 세부담 불균형이나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별도의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5. “실지조사”란 납세자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 출장하여 직접 해당 납세자 또는 관련인을 상대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6. “간접조사”란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서류나 과세자료 등의 분석을 통해 신고사항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거나 특정거래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관련인으로부터 우편질문 등을 통해 증빙자료를 수집하고 거래내용을 조회하는 등 실지조사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7. “통합조사”란 납세자의 편의와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과세기간에 대하여 그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함께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8. “세목별조사”란 세원관리상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재산세, 원천징수 대상세목 등 세목의 특성을 감안하여 특정 세목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 9.“긴급조사”란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 신청 등으로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가 필요한 납세자에 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0. “주식변동조사”란 주식변동 과정에서 관련 주주 및 해당 법인의 제세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1. “자금출처조사”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재산을 취득(해외유출 포함)하거나 채무의 상환 또는 개업 등에 사용한 자금과 이와 유사한 자금의 원천이 직업.나이.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의 출처를 밝혀 증여세 등의 탈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2. “이전가격조사”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시에 적용된 정상가격과 합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3. “위임조사”란 지방국세청장이 조사인력.업무량.조사실의 등을 감안하여 지방국세청 조사대상자를 세무서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4) 세무조사 중지

가. 세무조사 중지의 의의「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④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0.01.01 신설)

⑤ 세무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게 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채권의 확보 등 긴급히 조사를 재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2010.01.01 신설)

나. 세무조사 중지의 사유

조사관서장은「국세기본법」 제81조의8에 따라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조사 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기간 동안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다. 세무조사의 중지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10

법 제81조의8 제4항에서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2.18 신설)

1.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2010.02.18 신설)

2. 국외자료의 수집·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2010.02.18 신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2013.02.15 개정)

①.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2013.02.15 개정)

②. 납세자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2013.02.15 개정)

③.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2013.02.15 개정)

④.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2013.02.15 개정)

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2013.02.15 개정)

4. 삭제(2013.02.15)

5.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2014.02.21 개정)

라. 세무조사 중지를 할 수 있는 자

조사관서장은 세무조사 중지사유가 있어 납세자가 세무조사 중지신청을 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세무조사 (중지·연장) 신청 결과 통지에 세무조사 중지 여부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조사관서장이 세무조사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중지 통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마. 세무조사 중지 후 조사의 재개

조사관서장은 세무조사를 중지한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중지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중지사유가 소멸되었거나 증거인멸 우려 또는 조세채권 확보 등으로 긴급히 조사를 재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세무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세무조사를 재개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재개 통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조사를 재개함에 있어 조사반(팀)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가.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의의

조사공무원은「국세기본법」 제81조의9에 따라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 63조의1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나. 조사범위 확대사유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2.18 신설)

1.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도 있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2010.02.18 신설)
2.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2012.02.02 개정)
3. 특정 항목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어 그 항목에 대한 다른 과세기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2010.02.18 신설)
4.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2010.02.18 신설)

다. 세무조사 범위확대의 신청

주무국(과)장이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9조 또는 「양도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조사범위를 확대하려면 그 사유와 세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조사범위확대신청서에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5일 전까지 신청한다.

주무국(과)장은 제1항의 조사범위 확대신청 중 중소기업 납세자에 대한 조사 범위를 2회 이상 확대하려면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경유하여 직상급 세무관서의 장(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확대를 요청하여야 한다

위에 불구하고 조세범칙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포함)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조사범위 확대를 신청하지 않는다.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조사범위 확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주무국(과)를 경유하여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청한다.

라. 조사팀의 조사범위 등의 준수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동안 조사대상 과세기간 및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등에 대해 사전에 정한 범위와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마. 조사범위 확대유형에 따른 승인절차

중소기업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조사에서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소기업 납세자에 대하여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최초 조사범위 확대는 조사관할 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확대는 상급 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분조사로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조세범칙조사의 조사범위 확대 승인절차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조사범위를 확대하거나, 조세범칙조사에서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장부 서류 보관 금지

가. 장부 서류 등의 일시보관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장부·서류 등의 일시보관 방법에 의한 조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조사 시작 시 각 세법의 질문조사권에 따라 장부·서류·증빙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 단서에 따라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무조사 기간동안 관련 장부·서류·증빙 등을 조사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조사진행 중 증거인멸 우려 등 긴급한 경우에는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납세자의 동의 하에 장부·서류·증빙 등을 조사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다음날까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장부·서류 보관 금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또는 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장부등”이라 한다)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다만,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 기간동안 일시 보관할 수 있다.(2014.01.01 개정)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장부등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2014.01.01 개정)

다. 일시보관 동의서 징취 및 목록 교부

납세자의 장부·서류·증빙 등을 조사관서에 일시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즉시 장부·서류 등을 반환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장부·서류 등 일시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일시보관증,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 및 장부·서류 등 반환요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장부 서류 등의 일시보관

장부.서류 등의 일시보관은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일시보관한 장부.서류 중 증거서류로서의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납세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마. 일시보관 서류 등의 반환 요청

일시보관하고 있는 장부 또는 서류 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공무원은 장부 또는 서류 등에 대한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장부 서류 등의 반환

조사공무원은 일시보관하고 있던 장부.서류 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장부.서류 등 반환확인서를 납세자로부터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7) 통합조사의 원칙

가. 통합조사의 의의

“통합조사”란 납세자의 편의와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과세기간에 대하여 그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함께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나. 통합조사의 원칙

세무조사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010.01.01 신설)

통합조사에는 법인사업자 통합조사, 개인사업자 통합조사가 있으며, 법인사업자 통합조사에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을,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을 통합조사 한다는 의미이며,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통합조사의 세목에 재산세(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 통합조사의 전산입력 및 관리

조사관서장은 통합조사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범위, 세목 등을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8) 통합조사의 예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에서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2.18 신설)

- ①.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2010.02.18 신설)
- ②.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거나 혐의 내용이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만 한정되어 그와 관련된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2010.02.18 신설)
- ③.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2010.02.18 신설)

(4) 세무조사결과의 통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세무공무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①범칙사건의 조사
 - ②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한 조사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결과통지를 요하지 않는다.
- ①폐업
 - ②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경우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조세불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납세자와 반드시 사전협의를 하도록 국세기본법을 개정하도록 입법 발의한 상태입니다.

(5) 비밀유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세무공원은 과세정보(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말한다)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①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세의 부과·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②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③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④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⑤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⑥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⑦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위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단, 세무공무원은 이러한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6) 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①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세무사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수임대상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세무공무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자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 납세자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

2.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요구하는 경우 : 제1호에 따른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

④세무공무원은 위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정보를 요구하는 자가 납세자 본인 또는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공무원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7) 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6)

1. 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①국세청장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②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두고,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을 각각 1인을 둔다.

③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을 개방형직위로 운영하고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직무·권한 등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납세자 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직무 등

①납세자보호관은 조세·법률·회계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학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납세자보호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해소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2. 납세서비스 관련 제도·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3. 위법·부당한 처분(세법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제외한다)에 대한 시정요구
4.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및 중지
5.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및 중지
6. 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의 담당관에 대한 지도·감독
7.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납세자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관에게 그 직무와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④담당관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직급·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담당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해소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
3.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8) 과세 전 적부심사

(1) 개념

“과세전적부심사제도”란 세무관서가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주고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납세자로 하여금 그 과세에 대한 적부심을 청구하도록 하여 그 심사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한 경우에는 이를 고지 전에 시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과세전적부심사는 고지전 구제제도라는 점에서 조세불복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2) 청구절차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명통지 및 일정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것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 ①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 ② 국세청장의 훈령·예규·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 ③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에 관한 것
- ④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 과세전적부심사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것

(3)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 할 수 없다

- ① 국세징수법에 규정된 납기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 ㉡납세자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
 -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
 -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④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 한 경우

(4)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에 의한다.

- ①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 ②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는 결정. 다만, 청구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 채택하는 결정을 할 것
- ③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5)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감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통지가 지연 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의 50%를 감면한다.

(9) 납세자의 협력의무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 조사, 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10) 납세자보호위원회

(1)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안건

다음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둔다.

- ① 세무조사 대신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 1과세기간 공급사액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인 납세자(이하 “중소규모납세자”라 한다)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주세범칙조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기간의 연장. 다만, 조사대상자가 조세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연장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중소기업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의 안내
- ③ 세무조사 기간 연장에 대한 중소기업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요청
- ④ 세무조사 중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요청
- ⑤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안건
- ⑥ 그 밖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2)비밀보호 등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업무 중 알게 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감독한다.